

전주지방법원 2018. 8. 16 선고 2017나13635(본소), 2017나13642(반소)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매매대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변론 종결 2018. 6. 21

판결선 고 2018. 8. 16

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. 10. 31. 선고 2016가단1845(본소),
2016가단4028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주위적으로,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에게

정읍시 C 지상 흙벽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50㎡ 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
철거하고, 해당 부지의 토지를 인도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로부터 2, 500,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해당
부지의 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반소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, 500, 000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예비적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
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만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피고는, 피고의 조부 망 G이 1935. 1. 말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
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(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는 마치지 않았고,
그러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시조부인 망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) W
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피고의 조부 망 G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
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상국 판사 김진성 판사 박미영